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179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58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redacted]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05. 12. 29. 법률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0. 7. 1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redacted]구 [redacted]동 일대의 공유수면 19,740,453㎡(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사건 매립지 및 주변 지역의 환경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1,586,076,918원, 2010년 803,806,691원, 2011년 451,569,510원, 2012년 425,998,800원 상당의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연도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세액 합계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2009	1,586,076,918	31,721,530	20,411,300	3,172,130	2,041,100	57,346,060
2010	803,806,691	16,076,120	8,465,430	1,607,590	846,520	26,995,660
2011	451,569,510	9,031,380	3,288,860	903,130	328,860	13,552,230
2012	425,998,800	8,519,970	2,265,580	851,990	56,120	11,693,660
합계	3,267,451,919	65,349,000	34,431,170	6,534,840	3,272,600	109,587,610

라. 원고는 2013.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 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1) 입목은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로써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토지를 취득할 때 입목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목의 과세시기를 토지와 별개로 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의 준공인가의 승인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식재하였고, 이 사건 매립지의 사용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로 이전되는데, 이 사건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조경용 수목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참조).

㈏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경용 수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입목은 이 사건 매립지의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취득시기는 이 사건 입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호는 토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로, 제11호는 입목을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으로 정하고 있어서 토지와 입목을 별개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부동산과는 별도로 입목을 취득한 자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은 토지와 입목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8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위 토지의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에 관하여는 별도의 취득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바, 입목에 관하여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그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준공인가의 승인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식재하였고, 이 사건 매립지의 사용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이 종료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인천광역시에게 이전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입목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취득시기는 법인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관련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⑨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